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



집필

오정은 (한성대학교 교수)

김혜련 (한성대학교 교수)

백성준 (한성대학교 교수)

이보연 (법률사무소 보리 변호사)

전영순 (동국대학교 연구원)

삽화

한수경 (한성대학교 교수)

목 차

I. 입국	1
1. 입국 전 준비	1
2. 입국직후 할 일	3
II. 체류자격	5
1. 체류자격 연장	5
2. 체류자격 변경	6
III. 병역	7
1. 병역대상 확인	7
2. 병역 이행	9
3. 병역 연기	11
4. 제외국민 2세	11
5.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11
IV. 관공서 이용	13
1. 행정서류 발급	13
2. 우편물 발송	15
V. 교통	16
1. 대중교통	16
2. 자가용 운전	25
3. 공유자전거/공유킵보드	27

VI. 통신	31
1. 휴대폰 개통	31
2. 인터넷	33
3. 케이블TV	34
VII. 긴급상황	35
1. 재난·재해	35
2. 사건·사고	39
VIII. 산업안전	40
1. 산업안전 교육	40
2. 산업재해 신고	42
3. 산업재해 보상	44
IX. 부동산	45
1. 매매	45
2. 임대차계약	47
3. 임대차보호법	48
X. 금융	50
1. 금융기관 종류	50
2. 은행계좌 개설	51
3. 환전 및 송금	53

XI. 의료·보건·복지	56
1. 의료기관 이용	56
2. 출산 및 육아	59
3. 노인 복지	62
4. 저소득층 지원	62
XII. 경제활동	63
1. 취업	63
2. 창업	65
3. 구인	67
4. 노무관련 문제 대응	68
XIII. 교육	69
1. 정규교육	69
2. 방과 후 교육	75
3. 한국어교육	76
XIV. 문화생활	79
1. 도서관	79
2. 박물관·미술관	79
3. 문화센터	79
4. 스포츠시설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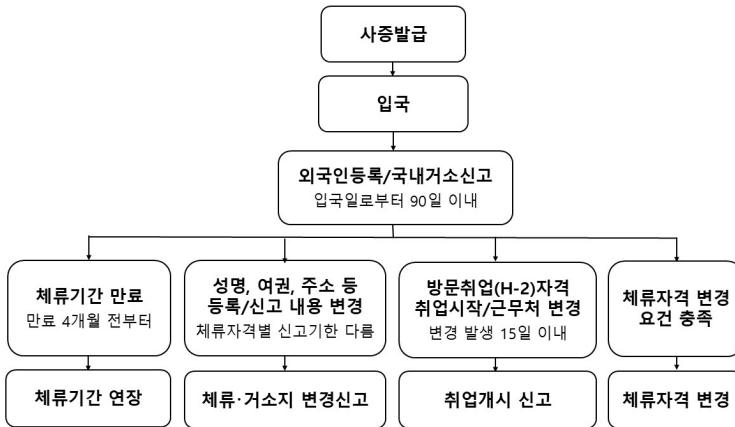
XV. 일상생활	81
1. 쓰레기 분리수거	81
2. 애완동물 애티켓	85
3. 공공요금 납부	86
4. 소비자 보호	88
5. 자원봉사	89
XVI. 국내동포 관련 법제	90
1. 국내동포 관련 법령	90
2. 국내동포 정책 수행 기관	92

I 입국

1. 입국 전 준비

사증(VISA) 준비

- 재외국민: 대한민국 입국과 체류를 위해 별도의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입국 전 거주국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한국 입국 및 체류 목적에 맞는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는....

법령 구분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 동포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 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대한민국 사증

- 동포단기방문(C-3-8): 한국과 단기방문 사증면제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 국적의 동포를 위한 비자입니다. 5년간 여러 번 입국 가능하며, 입국 1회당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체류 중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순노무직과 사행성 직종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의 취업제한 직종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소개되었습니다.
- 방문취업(H-2): 중국 및 옛 소련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18~55세 동포를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단순노무직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국 직후 할 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

-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로 다시 이주해도 재외국민등록이 유지되고, 국내에서 신분확인, 금융 및 부동산거래에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신청은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 구비서류는 재외국민등록부, 증명사진(흰색배경, 3.5cm×4.5cm), 여권입니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신청

-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약칭,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소증 신청 구비서류는 여권, 사진, 국적상실신고접수증(해당자), 체류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외국인 직업 신고서 등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관할지역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체류자격

1. 체류자격 연장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까지 주소지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 연장은 횟수에 제한없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사증 소지자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취업 중이면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후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취업 상태가 아니고 취업목적이 아닌 가족과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을 이유로 체류연장을 하려면 **최대 1년간**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횟수에 관계없이 여러 번 체류자격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체류자격 변경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신고

- 처음 신고한 내용과 성명, 여권정보, 체류지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방문취업(H-2) 사증 소지자는 한국에서 처음 취업했을 때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고, 근무처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사증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요건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자, 요양보호 자격 취득자 등
-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하고 영주자격 일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요건

-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고, 소득·재산 등 영주자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Ⅲ 병역

1. 병역대상 확인

병역대상자

- 병역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18~40세 남성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국적동포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 복수국적을 포함하여 한국국적을 가진 남성이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인 183일 이상 거주할 때 병역대상자가 됩니다.



병역준비역 편입

- 병역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편이나 이메일로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병역대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 편입’ 상태가 됩니다.
- 「병역법」에서 ‘OO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 =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연령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과정

18세	19세	19~37세	40세까지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19~37세까지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입영		
		40세까지 예비군 편성	

주: 1) 전사사변 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기간이 45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1월 1일 기준

병역판정검사 신청

- 병역준비역 편입 상태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성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의 날짜와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1~7급의 신체등급의 결과서를 받게 됩니다.
- 1~3급을 받을 때 현역이 되어 군대에 갑니다.
-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 질병이 발생하면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현역병 입영대상 (군대에 입영하는 사람)			보충역 (사회복무 요원에 소집되는 사람)	전시근로역 (전쟁 시 군사업무 지원하는 사람)	병역면제 (병역의무가 없어진 사람)	재신체검사 (질병치료 후 다시 검사 받는 사람)

주: 2025년 1월 1일 기준



2. 병역 이행

병역의 종류

- 병역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이 있습니다(「병역법」 제5조).
- 병역은 현역의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보충역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대체역의 대체복무요원 등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 국내동포가 병역을 이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현역

- 병역판정검사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합니다.
- 현역병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다른 현역병들과 합숙하며 복무합니다.
- 입영일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고 병무청장의 결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전환복무는 현역인 자가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상근예비역은 일정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한 자가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복무하는 부대는 입영을 지원할 때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훈련소로 입영한 다음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역

- 대체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3. 병역 연기

-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이 예정된 자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재외국민 2세 제도

-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이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병역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2세 제도 대상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후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을 받아서 재외국민 2세라고 확인받은 사람입니다.
- 다만,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제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5.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제도

-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25세 이상이면서 병역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역, 보충역,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라도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여행하는 중에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연장 신청도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문의

- 국외여행 허가 관련 문의는 지방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담당자,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병무청 챗봇 '아라',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담당자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381~4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35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51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96, 7299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9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329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85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5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57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56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16	인천병무지청	032-740-2500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7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8

IV 관공서 이용

1. 행정서류 발급

구청과 주민센터 방문

- 한국에서 은행 업무, 집 계약, 핸드폰 개통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민원실로 가서 민원실에 놓인 서류신청서 발급받으려는 서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번호표를 뽑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 후,
- 자신의 차례가 되면 창구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이야기하고 서류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서류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24' 이용

-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웹사이트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예시사진) 후 서류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사이트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우편물 발송

우체국 방문

- 국내나 국외로 서류나 물건을 보낼 때 우체국(EMS)을 이용합니다.
- 우체국을 통해 물건을 보낼 때는 내가 가까운 우체국에 물건을 직접 가지고 가서 보낼 수도 있고, 우체국 직원이 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우체국에서 물건을 보낼 때 요금은 물건의 종류, 크기,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체국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문접수서비스 이용

- 우체국 직원이 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방문접수 방식을 이용할 때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및 앱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방문접수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

1) 시내교통

시내버스 이용

- 버스는 집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를 타기 전에 먼저 내가 타야 하는 버스의 번호를 확인하세요.
- 내가 타야 하는 버스 번호는 지역별 버스정보 웹사이트 또는 앱(예: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카카오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 버스정보 웹사이트

- 서울특별시: <https://topis.seoul.go.kr/map/openBusMap.do>
- 인천광역시: <https://bus.incheon.go.kr/bis/main.view>
- 부산광역시: <http://bus.busan.go.kr>
- 대전광역시: <https://traffic.daejeon.go.kr/bus/busInfo>
- 대구광역시: <https://businfo.daegu.go.kr>
- 광주광역시: <http://bus.gwangju.go.kr/main/main>
- 울산광역시: <https://its.ulsan.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s://bis.sejong.go.kr>
- 경기도: <https://www.gbis.go.kr>
- 경상남도: 광역 통합서비스 없음. 시군 단위 정보시스템 운영
- 경상북도: 광역 통합서비스 없음. 시군 단위 정보시스템 운영
- 전라남도: 광역 통합서비스 없음. 시군 단위 정보시스템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서비스 없음. 시군 단위 정보시스템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 <https://www.gangwon-pti.kr/index.php>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정보: <https://bus.jeju.go.kr/>

시내버스 유형

- 시내버스에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 ▷ 간선버스: 지역간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
 - ▷ 지선버스: 원거리를 운행하지 않고,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 간선버스 운행을 보완하는 버스
 - ▷ 마을버스: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이어주고 다른 교통 수단과 연계를 위해 운영하는 단거리 노선의 소규모 버스. 일반적으로 다른 버스보다 저렴한 요금 책정
 - ▷ 순환버스: 종착지가 따로 없이 계속 고리 모양으로 순환하는 노선 버스

▷ 광역버스: 대도시와 그 주변의 위성도시를 연계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 시외버스보다는 저렴하지만, 다른 시내버스보다 비싼 요금 책정

- 시내버스 유형에 따라 버스 색깔이 다릅니다.
- 시내버스 유형별 색깔은 지역마다 서로 다릅니다.

서울 운행 시내버스 유형별 색깔



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하철 이용

- 지하철은 도로에 차가 많을 때 버스나 택시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탈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 있는 매표소나 무인발매기에서 승차권을 사야 합니다.
- 승차권을 구매하는 대신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기



큰 소리로 전화하지 않기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지역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
수도권	서울교통공사	www.seoulmetro.co.kr
수도권	서울시 메트로9호선	www.metro9.co.kr
수도권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수도권	네오트랜스주식회사	www.shinbundang.co.kr
수도권	코레일공항철도	www.arex.or.kr
부산	부산교통공사	www.humetro.busan.kr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www.dtro.or.kr
인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www.incheon.go.kr/iurail
광주	광주도시철도공사	www.grtc.co.kr
대전	대전도시철도공사	www.djet.co.kr

교통카드 사용

-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 교통카드는 버스정류장 근처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티머니 서비스센터에서 살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는 미리 돈을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를 승차할 때는 교통카드를 운전사 옆 단말기에 터치하여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 시에도 내리는 문 옆 단말기에 터치해야 하는데 탑승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하차 시 터치하지 않고 내릴 경우 최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지하철을 탑승할 때는 지하철 개찰구 기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각각 터치하면 요금이 지급됩니다.
-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와 지하철을 연속적으로 탈 때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노선이나 일부 노선은 할인 혜택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일부 신용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미리 충전하지 않더라도 이용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함께 교통요금이 청구됩니다.

택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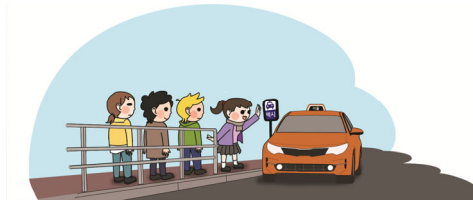
- 대한민국에서 택시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택시는 차 윗부분에 TAXI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택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일반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택시 종류와 모양



- 해당 지역 택시업체에 전화하여 호출하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호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가는 빈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어 택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2) 시외교통

기차 이용

- 기차는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합니다.
- 기차에는 고속철도(KTX, SRT)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가 있습니다.
- 기차를 이용하려면 미리 티켓을 구입해야 합니다.
- 티켓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SRT 홈페이지(etk.srail.kr), 코레일톡 앱, SRT 앱에서 예약하면서 구입하거나, 기차역의 매표소 창구나 무인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기차표 예약은 기차 출발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고속철도

- 고속철도에는 KTX와 SRT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고속철도는 시속 300km 정도로, 일반기차보다 빠르기 때문에 요금이 비쌉니다.
- KTX를 타고 내리는 기차역은 레츠코레일(www.letskorail.com)에서, SRT는 SR(etk.sra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철도

- 일반철도에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있습니다.
- 새마을호가 무궁화호보다 시설이 좋은 대신 요금이 비쌉니다.
- 일반철도 노선에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서울과 전라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연결하는 호남선, 그리고 경전선, 전라선, 강릉선 등이 있습니다.
- 일반기차는 고속철도보다 느리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고, 타고 내릴 수 있는 기차역이 더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거리버스 이용

- 장거리버스는 먼 거리에 있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입니다.
- 장거리버스에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 고속버스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탈 수 있습니다.
- 고속버스에는 일반고속버스, 우등고속버스, 프리미엄고속버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우등고속버스는 일반고속버스보다 비싸지만 더 넓고 좌석이 편안합니다.
- 프리미엄고속버스는 일반고속버스와 우등고속버스보다 비싸지만 개인테이블이 있고 전용모니터로 영화와 TV를 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버스 티켓 예매

- 장거리버스는 티켓을 미리 예매하고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고속버스 티켓 예매는 타고(www.tago.go.kr) 또는 코버스(www.kobus.c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시외버스 티켓 예매는 시외버스 통합예매시스템(txbus.t-money.c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자가용 운전

운전면허증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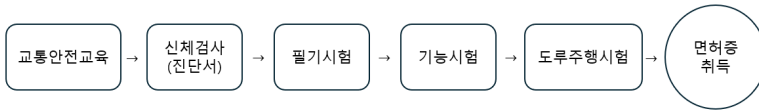
- 한국에서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취득은 외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한국의 면허증으로 바꾸는 방법과,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대한민국 면허증을 새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기

- 대한민국과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외국 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국가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때에는 신체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 대한민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주한 해당국가 대사관에서 면허가 진짜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가능)을 치르고 통과했을 때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하기

- 운전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유자전거/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란?

- 공유자전거는 공공자전거라고도 부릅니다.
- 공유자전거는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자전거를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주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가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유자전거

서비스 권역	서비스 명칭(서비스지역)
수도권	따릉이(서울특별시)
강원권	e바퀴로(강원 원주시)
충청권	백제쌍쌍(충남 공주·부여), 어울림(세종특별자치시), 타슈(대전광역시), 달려보령(충남 보령시)
영남권	그린쌍(경남 거창군), 누비자(경남 창원시), 양산시 공공자전거(경남 양산시), 타고가야(경남 김해시-위탁), 타반나(부산 기장군), 타실라(경북 경주시), 아라쌍쌍(경남 함안군)
호남권	꽃싱이(전북 전주), 여수랑(전남 여수), 온누리자전거(전남 순천), 이킵(전남 순천), 타랑께(광주광역시)

주: 2024년 8월 31일 기준.

공유자전거 이용 방법

- 지자체별, 민간단체별로 이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공유자전거 앱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 후 이용합니다.
-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빌려서 사용하고 이용 후 다른 거치대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 거치대는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어 자전거 이용과 반납이 기록됩니다.
- 스마트폰 지도 앱을 이용하여 이용 가능한 거치대를 찾거나 거치대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 쓰고 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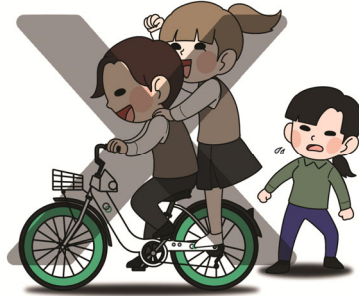
거치대에 반납하기



큰 소리 들으며 타지 않기



2인 이상 함께타지 않기



어두운 곳에서 조명등 켜고 타기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하기



공유킥보드란?

- 전기 모터가 장착된 킥보드입니다.
- 운전면허증이나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유킥보드 서비스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합니다.

공유킥보드 이용 방법

- 스마트폰으로 공유킥보드 앱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면허증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앱에서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킥보드 주차구역에 가서 QR 코드를 앱으로 스캔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간 다음에는 가까운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합니다.
- 전통킥보드 이용 중에는 안전모(헬멧) 착용, 도로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 사용 후 앱에서 사용종료를 선택하면 연동된 결제수단으로 비용이 자동청구됩니다.

안전모 착용하기



QR코드 잠금 해제하기



큰 소리 들으며 타지 않기



2인 이상 타지 않기



음주직후 타지 않기



주차구역에 반납하기



1. 휴대폰

한국의 휴대폰 통신사

- 한국의 휴대폰 통신사는 KT, SKT, LG U+가 있습니다.
- 한국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통신사 이름이 적힌 매장으로 들어가서, KT, SKT, LG U+ 의 휴대폰 개통 방법을 물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 KT, SKT, LG U+ 이외에 '알뜰폰'이라고 불리는 가격이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휴대폰 통신사도 있는데, 알뜰폰 통신사는 KT, SKT, LG U+보다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적고, 오프라인 매장 수도 더 적습니다.
- 3개의 휴대폰 통신사를 모두 취급하는 매장이 있고, 특정한 통신사만 취급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 휴대폰을 개통하기 전에 한국의 은행계좌를 만들었다면, 휴대폰 요금을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은행계좌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이나 거소증을 제시하고, 휴대폰 요금을 미리 내고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은 매장에서 새로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가져가도 됩니다.
- 만19세 이하 미성년자는 혼자 가게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고, 보호자와 함께 가야 개통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가입

-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하려면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KT, SKT, LG U+ 통신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인터넷 서비스에 함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비용은 처음 가입하면서 한 번 지불하는 가입비용과 매달 지불하는 이용요금으로 구성됩니다.
- 인터넷 서비스 비용은 인터넷 제공 회사, 인터넷 속도, 데이터 제한 사항, 서비스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신사에 따라 인터넷만 이용하는 요금, 인터넷+전화 이용 요금, 인터넷+TV 이용 요금, 인터넷+전화+TV 이용 요금으로 서비스 유형을 묶어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공공와이파이(public wifi) 사용

- 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신 3사(KT, SKT, LG U+)와 협력하여 공항, 기차역, 주민센터, 복지시설, 전통시장, 시내버스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와이파이 사용방법과 사용장소는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 (www.wififree.kr/pu/si/N01.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케이블 TV

케이블 TV 서비스 업체

- 케이블TV 서비스 업체는 크게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케이블TV와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KT, SKT, LG U+)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지역케이블TV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 통신 3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케이블TV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핸드폰이나 인터넷과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가격이 저렴해 집니다.

VII 긴급상황

1. 재난·재해

집중호우



건물 지하·반지하에서 나오기

비가 오면 지하실이나 반지하 가옥은 침수되기 쉽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 지하에서 즉시 밖으로 나옵니다.



하천 근처 도로 피하기

비가 오면 하천이 물이 금방 늘어나고 범람할 수 있습니다. 하천도로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비탈면 및 산사태 위험지역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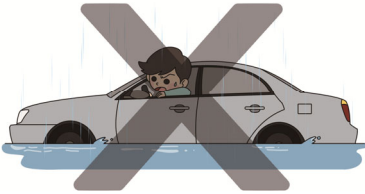
비가 많이 내리면 산비탈의 흙이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 비탈면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전기 및 가스 차단하기

전기 감전과 가스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빨리 전기와 가스를 차단합니다.



운전하지 않기

자동차 안에 있을 때 물이 차오르면 자동차 문을 열기 어렵고, 자동차와 함께 침수 되거나 떠내려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침수도로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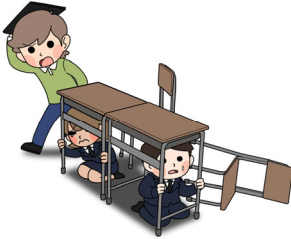
침수된 도로는 깊이를 알 수 없고, 맨홀이나 배수로 뚜껑이 열려 빠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지진



집 안에 있을 때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테이블이나 책상과 같이 머리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구 아래로 대피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백화점, 마트에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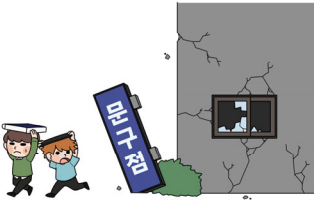
빨리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때에는 쇼핑바구니나 가방을 쓰고 웅크리고 앉아서 선반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



건물 밖으로 나갈 때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빨리 밖으로 나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건물벽이 떨어져 나올 수 있으니, 건물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공터로 갑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바다와 멀리 떨어진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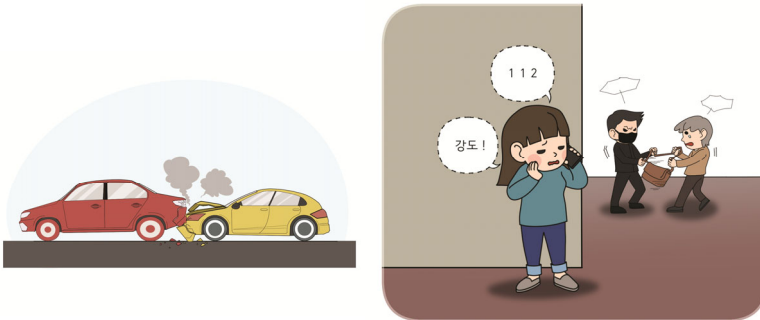
119 신고하기

- 119는 소방청 구급서비스로 연결되어 구급차를 부르는 전화번호입니다.
- 불이 났을 때나 집이 물이 잠겼을 때, 기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면 119로 전화하세요
- 스마트폰에 미리 119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두면 긴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거는 대신 앱 터치를 통해 더 빠르게 119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사건·사고

112·119 신고하기

- 112는 경찰청 종합상황실과 연결되는 전화입니다.
- 교통사고가 났을 때나 거리에서 폭행·강도 사고를 당했을 때 등 기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112로 전화하세요.
- 크게 다쳐서 응급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119로 전화면 119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와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줍니다.
- 응급전화 119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연계되어 있어 112에 해당하는 사건이 119로 신고되어도 경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산업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 의무

- 한국에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교육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교육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동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산업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국내동포 역시 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작업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안전 보건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외국인 신분인 외국국적동포역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교육 횟수 및 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교육 시간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는 반기별 6시간 이상(상반기 6시간, 하반기 6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상반기 12시간, 하반기 1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사람은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는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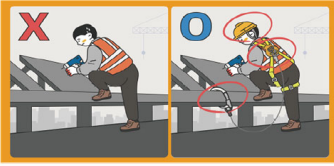
한국정부의 작업장 4대 금지 캠페인



① 안전장치 해제 NO!



② 모르는 기계 조작 NO!



③ 보호구 없이 작업 NO!



④ 작동 중인 기계 정비 NO!

2. 산업재해 신고

산업재해란?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업무와 재해가 관련이 있다는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증명될 때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 산업재해 인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 신고

- 작업 중 부상 등 사고를 당한 근로자나 그 대리인은 가능한 한 빨리 사업주(고용주)에게 산업재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받은 사업주(고용주)는 산업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산업재해 발생 내용에 대해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고보고서의 내용에는 사고과정, 재해(부상 등)의 성격, 사업 당시 작업 조건, 목격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치료

- 작업 중 부상을 당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즉시 병원이나 진료소로 가서 부상을 기록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려면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목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www.comwel.or.kr/comwel/medi/orsc.jsp)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 보상

피해 보상 및 유족 혜택

- 의료비 보상: 산업재해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병원비, 수술비, 재활비, 양품비 등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보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해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는 부상을 치료하고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일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보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해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을 경우,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 혜택: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와 부양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피해자 구제 및 지원

- 상담 및 법률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장 복귀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가 치료 후 직장에 복귀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물리 치료, 직업 훈련, 직업 상담이 포함된 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특별구제기금: 피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산재보험 보상이 부족한 경우, 특별구제기금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매매

재외국민의 부동산 거래

-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매 절차는 거래계약 체결 → 등기소에 등기 신청 → 취득세 납부 → 소유권 이전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외국인부동산 등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매매 절차 : 매매계약 체결 → 60일 내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인부동산 취득 신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제한 지역 해당 시 사전취득허가신청) →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및 확정

부동산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은 일반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한 주택 수, 부동산의 용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 외국국적동포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결정되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된 가격(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국내동포의 부동산 보유세는 일반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1가구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처럼 일부 제한이 있는 지역이거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 국내동포는 6개월 이상(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6개월 미만 거주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대차계약

임대와 임차

- 부동산을 팔지 않고 빌려주는 것을 '임대', 사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임차'라고 합니다.
- 부동산을 매매하는 대신 임대와 임차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한국의 임대차계약에는 액수가 큰 전세보증금을 주고 부동산을 빌려 일정기간 사용한 후 계약이 끝날 때 다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계약'과, 비교적 적은 액수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서 계약이 끝나면 처음의 보증금만 돌려받는 '월세계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절차

- 국내동포는 국적과 상관 없이 일반 한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간 계약 시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온라인(정부24)에서도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하며,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월세확정일자를 등록합니다.
- 전월세확정일자를 등록을 완료한 이후부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동산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신고만으로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항력(주택점유+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신고)이 모두 충족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내동포에게 국적과 상관없이 일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등록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파산 등으로 부동산을 경매할 때,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 중 일정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주택점유+전입신고) 조건이 충족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한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면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에게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2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갱신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국내동포에게 국적과 상관없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단,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차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부동산을 경매할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항력(사업자등록+실제 영업)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원할 때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법 역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업 활동을 위한 상가 임대 계약에서도 비슷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체 임대차계약기간 기준 최대 10년까지 보장(2023년 기준) 되지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건물 재건축, 정당한 사용 목적 등)가 있거나,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신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 한국의 전세제도는 처음에 큰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전세금을 두고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 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으로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 △전세계약 도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진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고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라지는 경우,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많아서 정부에 의해 부동산이 공매된 후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방법
 -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당시 임차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필수)
 - 임대인의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부동산 소유주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새로운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1. 금융기관 종류

제1금융권

- 은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다양한 국내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은행은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 은행으로 구분됩니다.
 - ▷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 ▷ 지방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 ▷ 외국계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 특수은행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은행으로, 특수법인과 국책은행으로 구성됩니다.
 - ▷ 특수법인: Sh수협은행, NH농협은행
 - ▷ 국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제1금융권 은행은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운영되어 안전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은행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

- 제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문적인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 금융관련 법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 제2금융권 기관으로는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등), 보험회사, 카드회사,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 제2금융권의 기준에 따라 저축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1금융권에 비해 금융서비스 종류가 적습니다.
- 제1금융권보다 대출을 쉽게 해 주지만 대출이자가 제1금융권보다 비쌉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비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적용법	은행법 특수은행 관련 특별법	금융관련 법
은행종류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새마을금고, 신협
취급상품	다양한 금융서비스, 외환서비스	제1금융권보다 제한된 서비스
대출조건	높음	낮음
대출금리	낮음	높음
예금금리	낮음	높음
안정성	높음	제1금융권보다 낮음

2. 은행 계좌 개설

재외국민의 은행 계좌 개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쉽게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 미리 방문 예약을 하지 않아도 방문한 은행에서 당일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으나,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고객(특히 외국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추가 서류 요구 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은행 계좌 개설

-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이라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 사증(VISA), 여권, 거소증, 국내 주소지 증명 서류,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면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일부 은행에서는 외국국적동포의 계좌 개설을 위한 별도 심사 과정이 필요하여 즉시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규정 강화로 인해 비거주자의 신규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므로, 은행 방문 전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기체류비자(C-3 등)의 경우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

- 재외국민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은 일반 한국인 설립 법인으로 간주되며,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대표자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여 은행에 가면 만들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설립한 법인은 외국인 투자로 간주되며,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거래도장 또는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개설목적증빙서류(재무재표, 부과세과세표준증명, 납부 사실증명서 등) 대표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준비하여 은행에 가면 만들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은행 계좌는 법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은행이 아니면 거부될 수도 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세요.

온라인 계좌 개설

- 인터넷 은행은 은행에 가지 않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핸드폰으로 인터넷 은행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개인정보와 통장 거래 이유, 신분증 확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 수 있습니다.



3. 환전 및 송금

환전 장소

-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거나,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것을 환전이라고 합니다.
- 한국에서 환전할 수 있는 장소는 일반은행, 사설환전소, 공항환전소가 있습니다.

- 사설환전소는 주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서울의 명동, 동대문 등)에 많습니다.
- 사설환전소라고 선전하는 무허가 사기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설환전소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환전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 환전 장소는 마이뱅크(www.mibank.me)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환전 방법

- 환전하고자 하는 돈과 여권을 가지고 환전 장소에 가서 원하는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환전 장소에서는 그날의 환율과 함께 환전수수료를 적용하여 최종 환전 비율을 정하는데, 환전수수료는 은행별로, 사설환전소별로 다르니, 큰 돈을 환전할 때에는 미리 비교해 보고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은행은 미국달러화, 유로화, 중국위원화, 일본엔화 이외의 외국 돈은 보관하고

XI 의료·보건·복지

1. 의료기관 이용

의료기관 종류

- 한국의 의료기관에는 병원과 약국이 있습니다.
- 병원은 의사가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이고, 약국은 약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병원 이용

- 한국의 병원은 크게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구분됩니다.
- 병원 구분은 병원의 규모와 진료의 전문성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몸이 아플 때 처음부터 3차 병원에 가면 안 되고,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 먼저 가야 합니다.
- 3차 병원에 가려면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을 먼저 방문하고, 병원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처음 방문하거나 6개월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병원은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가능)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병원 단계별 특성

단계 특성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명칭	OO의원, □□과(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보건소	OO병원, △△종합병원	OO의료원, △△대학병원
규모	환자용 침대 29개 이하	병원: 환자용 침대 30~99개 종합병원: 환자용 침대 100개 이상	환자용 침대 500개 이상
진료내용	외래진료, 예방접종, 건강관리	종합검사, 입원치료	정밀검사, 난치성 질환 치료, 장애·질병치료 및 관리
기타	일명 동네병원	진료과목 7개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

증상별 병원 진료과 찾기

진료과	주요 증상
내과	배가 아플 때
외과	상처가 나고 감염이 생겨 수술이 필요할 때
이비인후과	코, 귀, 목이 아플 때
소아청소년과	0~8세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플 때
안과	눈이 아플 때
치과	이가 아플 때
산부인과	임신했거나 출산할 때
신경과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이 심할 때
피부과	여드름, 두드러기 등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과	우울증, 불안, 불면 등이 생겼을 때
정형외과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아플 때
성형외과	흉터치료, 미용 등의 수술을 할 때
재활의학과	몸의 불편한 부분에 물리치료를 해야할 때

약국 이용

- 한국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의약품은 소화제, 진통제, 영양제 등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약품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왔을 때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약국의 운영 시간은 약국마다 다릅니다.
-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약국은 문을 열지 않고, 휴일지킴이 약국에서만 약을 판매합니다.
- 휴일지킴이 약국은 홈페이지(www.pha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인 모두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건강보험증과 납부고지서를 받습니다.
-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도 신분증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및 육아

임신직원 출산휴가

- 임신하고 출산하는 직장인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이후 45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이 한번에 둘 이상이 자녀를 임신했을 때에는 120일의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이후 6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임신한 자의 배우자(남편)은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출산휴가 제공 의무

- 직원을 고용한 사람은 임신한 직원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직장인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는 시작일부터 1~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이내이며, 1년 단위는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한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수당을 지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다만,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영유아 양육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은 정액제로 지급되며, 장애아와 농어촌가정 자녀에게는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동 연령별 양육수당 정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000원	24~35	156,000원	24~35	200,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36~47	129,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48개월 이상~	100,000원		
	100,000원	86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미만	100,000원		

주: 2024년 11월 30일 기준.

3. 노인 복지

노인 복지 수당

- 한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내 연령이 높은 노인에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각종 수당을 제공합니다.
- 노인 복지 수당에는 건강보험료, 대중교통비, 기초연금, 독거노인 간병비, 효행장려금, 저소득노인 사회활동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제공되며, 지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 노인 복지 수당 수혜 자격요건과 혜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 한국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내 체류 동포(외국국적포함)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상)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소득 증명서, 가구원 명부 등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받은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구의 소득 및 보유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지원 자격요건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근 6개월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취업

체류자격과 취업

- 재외국민은 일반 한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F-5) 사증 소지자도 일반 한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중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건설업, 일부 단순노무직종,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업소나 도박관련 직종 등 일부 직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중 방문취업(H-2) 사증 소지자는 처음 입국한 3년간은 특례고용허가제가 허용하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있지만(단, 고용센터에서 취업교육 이수 필요), 3년 경과 후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한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중 동포단기방문(C-3-8) 사증 소지자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할 경우 목적 외 활동을 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종

- 법무부고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제한 범위”에 규정된 직업
 - 20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에 규정한 단순 노무직 39개 직종, 미풍양속에 반하는 도박업소 및 유흥업소 근무 직종,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한 8개 직종
- ▷ 단순노무직 금지 직종: 건설 단순종사원, 광업 단순노무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이사집운반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가구 운반원 등), 우편집배원, 택배원, 그 외 택배원(퀵서비스 배달원 등), 음식배달원, 음료배달원, 신문배달원, 그 외 배달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부착원, 건물 청소원, 운송장비 청소원, 그 외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아파트경비원, 건물 경비원, 그 외 건물관리원(교회 관리인 등), 검표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그 외 판매관련 단순종사원(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등), 산불 감시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관리원, 주차 안내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환경감시원,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원(심부름원 등)
- ▷ 국내취업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직종: 피부관리사 내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 혼례 종사원, 노래방 서비스원,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PC방 종사원 등), 골프장 캐디,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채용정보 수집 방법

- 취업을 하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유형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한국에서 직원채용 정보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과 직업소개소 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직업소개소 이용 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업종별, 직종별, 지역별 채용정보가 소개되고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 정보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직업소개소는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며, 주로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고용24 이용

- 고용24(www.work24.go.kr)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포털사이트입니다.
- 취업특강, 취업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고용관련 서비스의 일환으로, 채용정보를 제공합니다.
-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구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창업

국내동포 창업 요건

- 재외국민은 일반 한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국내에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는 영주(F-5) 사증과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 별도의 체류자격 취득 없이 국내에서 일반 한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영주(F-5)와 재외동포(F-4) 이외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창업을 위해 기업투자(D-8) 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창업 요건과 절차는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법률사무소, 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지원 서비스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www.kised.or.kr)에서 창업교육, 창업관련 행사, 멘토링, 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K-Startup(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통해 창업지원사업 공고, 창업 관련 법률지원, 창업상담, R&D지원,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창업 준비자 및 초기창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지원 서비스를 검색해 보세요.
-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 신분으로서,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www.startup-korea.com)를 통해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에는
한국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3. 구인

직원채용 공고

- 창업한 회사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가족이나 지인의 추천을 받거나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 후 회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직원채용 공고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회사가 원하는 직원의 능력과 업무 조건을 공고할 수도 있고, 유사업종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구직란에 탑재한 자기소개서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채용 과정의 유의점

-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국의 노동관련 법/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노동관련 법으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 직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가능 사증 보유 여부, 채용에 따른 사증 발급 가능 여부, 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 해당 여부,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노무관련 문제 대응

무료 상담서비스 이용

- 정부나 비영리기관에서 노무관계 해결을 위한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 대표적인 노무관계무료 상담서비스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의 무료 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의 지방노동청 주소 및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 '기관소개' 에서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료 노무법인 서비스 이용

- 노무관련 문제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을 통해 노무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의 서비스는 법률 자문, 인사관리, 노동분쟁 해결 등 다양하며, 노사문제 전문가인 노무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업무를 지원합니다.
- 노무법인 가운데에는 법무법인을 겸하는 곳도 있으며, 이 경우 산재 신청이나 임금 체불 신고 등 행정적 업무는 노무사가 담당하고, 법원 소송에 관한 업무는 변호사가 맡아 협업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정규교육

정규교육과정

- 한국에서 정규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 교육과정이지만, 고등학교 3년은 의무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 일부는 공립학교이고 일부는 사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 교육비 대부분 정부 부담(무료) • 지역거주 학생 입학 • 다양한 배경이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며 사회성 학습 •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안정적 교육 환경 •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나 개인 운영 •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 가능 • 학교별로 예체능, 외국어 등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시험, 추천 등 선발과정을 통과한 학생만 입학 가능 • 사회적 배경이 유사한 학생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 다양성 학습에 불리

공립 초등·중학교 입학 및 편입학

- 거주지가 속해 있는 학구 안에 있는 학교의 장에게 입학/편입학 신청을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호).
- 학생의 입학/편입학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고 입학이나 전학을 허가합니다.

- 아이의 보호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학교의 장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본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외국인등록 서류, 한국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사립 초등·중학교 입학 및 편입학

- 학교별로 입학/편입학 방식이 다릅니다.
- 자녀를 입학/편입학시키려는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별 입학/편입학 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및 편입학

-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과정이 아닙니다.
- 한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전기학교 입학전형(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이나 후기학교 입학전형(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선발고사)을 거쳐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학생선발이 이루어집니다.
- 동포 자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라 일반 한국학생들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의 입학전형을 통해 정원 외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요건이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

학교유형	특징	선발시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술인력 양성 목적 학교	11월~12월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입학시험 이나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학교	12월~이듬해 1월 초
일반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 하는 학교	이듬해 2월

국내동포 자녀 고등학교 정원의 입학 자격요건

-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외국국적자. 단,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교

- 한국에서 대부분의 학교는 한국어로 공부하지만 일부학교는 외국어로 공부합니다.
- 한국에서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교는 크게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로 구분됩니다.
- 국제학교는 한국인도 입학 가능하지만,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입학하고 한국인은 예외적으로 입학이 허용됩니다.
-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운영되며,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후 외국소재 대학에 진학합니다.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보유한 자가 입학 • 한국국적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입학 가능 • 대한민국 교육부가 한국의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급학교 진학시 학력 불인정 • 일부 외국인학교는 학교명으로 "OO 국제학교"라는 명칭 사용하는데, 한국 교육부로부터 학력인정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통해 한국국적자 입학을 허용 • 입학시 국적보다 학업능력을 중요한 입학허가 기준으로 설정 •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졸업후 한국의 학력 인정

한국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은 국제학교는
한국의 상급학교 진학시
학력을 인정받지만
외국인 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주 의 !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 국제학교(7개교)

소재지	학교명	교육언어	한국학생 선발 비율
대구 광역시	대구국제학교 (https://www.dis.sc.kr)	영어, 중국어, 한국어	30% 이내
인천 광역시	채드윅송도국제학교 (https://www.chadwickinternational.org)	영어, 중국어, 한국어	30% 이내
인천 광역시	캘빈매니토바국제학교 (https://www.calvinschool.kr)	영어, 중국어, 한국어	30% 이내
제주 특별 자치도	브랭섬홀 아시아 (https://www.branksome.asia)	영어	100% 가능
제주 특별 자치도	한국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https://kis.ac)	영어	100% 가능
제주 특별 자치도	노스런던컬리지게이트스쿨 제주 (https://www.sfis.kr)	영어	100% 가능
제주 특별 자치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https://www.sjajeju.kr)	영어	100% 가능

주: 2024년 11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외국인학교(38개교)

소재지	학교명	교육언어
서울특별시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영어
서울특별시	서울독일학교	독일어
서울특별시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	영어
서울특별시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영어
서울특별시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영어
서울특별시	코리아외국인학교	영어
서울특별시	한국외국인학교(서울캠퍼스)	영어
서울특별시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영어
서울특별시	서울외국인학교	영어
서울특별시	서울용산국제학교	영어
서울특별시	서울프랑스학교	프랑스어
서울특별시	하비에르 국제학교	프랑스어
서울특별시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중국어
서울특별시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중국어
서울특별시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중국어
서울특별시	재한몽골학교	몽골어, 한국어
서울특별시	서울일본인학교	일본어
부산광역시	부산외국인학교	영어
부산광역시	부산일본인학교	일본어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영어
부산광역시	부산화교소학교	중국어
부산광역시	부산화교중고등학교	중국어
대구광역시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영어, 중국어, 한국어
대구광역시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인천광역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영어
인천광역시	인천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	중국어
광주광역시	광주외국인학교	영어
대전광역시	대전외국인학교	영어

소재지	학교명	교육언어
울산광역시	현대외국인학교	영어
경기도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영어
경기도	국제 크리스천학교	영어
경기도	한국외국인학교(판교)	영어
경기도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영어
경기도	서울국제학교	영어
경기도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중국어
강원도	원주화교소학교	중국어
경상남도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영어
경상남도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영어

주: 2024년 11월 30일 기준.

2. 방과 후 교육

중·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

-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내용을 구성합니다.
- 교육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기도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 교육 내용은 학교별로 다른데, 크게 예술 분야, 체육 분야, 학습분야, 체험활동 분야로 구분됩니다.
 - ▷ 예술 분야: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첼로 등의 악기를 배우는 음악 수업, 드로잉, 수채화 그리기, 토탈 공예 등의 미술수업, 방송댄스 등
 - ▷ 체육분야: 줄넘기, 탁구, 농구, 배드민턴, 축구 등
 - ▷ 학습 분야: 창의수학, 국어·논술, 영어회화, 역사, 한자, 컴퓨터 등
 - ▷ 체험활동 분야: 쿠킹클래스, 아로마클래스, 원예테라피, 로봇과학 등
- 수업 진행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선발한 전문 강사가 담당합니다.

초등학생 늘봄학교

- 초등학생 정규 교육 이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입니다.
-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 끝날 때, 학교에서 보충학습과 자녀 돌봄개념 통합한 프로그램입니다.
- 방과 후 학교는 학교 공간만 이용하지만, 늘봄학교는 학교 이외에도 지역의 돌봄기관, 도서관, 대학 등의 시설도 이용합니다.
- 늘봄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최대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 자녀들을 돌봐줍니다.

늘봄학교·방과후 학교 정보

늘봄·방과후지원포털(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3.do).

3.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기관 유형

-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에는 대학교 부설 어학원, 민간 어학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한국어교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시설 한국어교실, 법무부가 지원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등이 있습니다.
- 대학교 부설 어학원과 민간 어학원은 수업료가 비싸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민간단체 한국어교실은 종교단체나 대기업 소속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료가 무료인 곳과 유료인 곳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운영 한국어교실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특정 요일에만 제공됩니다.
- 법무부가 지원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전국 약 400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제공됩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약 400여 곳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수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받을 장소를 신청한 후 레벨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수준에 적합한 단계의 수업을 이수합니다.
- 0~5단계로 구성되며, 0~4단계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5단계는 한국사회이해를 주제로 수업합니다.
- 매 단계별로 평가를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신분인 외국국적동포가 5단계 기본과정을 이수하면 영주(F-5) 사증을 신청할 때 한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와 교육시간

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30시간	70시간

무료 온라인 한국어 교육

-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한국어 교육도 있습니다.
- 무료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한국어교육 플랫폼

운영기관	플랫폼	내용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누리-세종학당 (www.sejonghaktang.org)	한국어 레벨 테스트 학습교재 e-book 제공 온라인 학습 동영상 및 보조자료 제공
	모바일학습 앱 (스마트폰 앱 '세종한국어' 검색)	단어학습(초급/중급/고급) 회화-발음 학습(초급/중급) 문법 학습(초급/중급)
	온라인 세종학당 (www.iksi.or.kr)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개 강좌
국립국어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어 교수학습센터 (kcenter.korean.go.kr)	학습교재 e-book 제공 한국어 동영상 '쌍쌍한국어', '두근두근한국어'
	한국어 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krdict.korean.go.kr)	쉬운 뜻풀이의 사전 정보 제공 11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재외동포청	스터디코리아 (study.korean.net)	온라인 한국어 학습 콘텐츠 제공 한국어 및 한국역사 교육 영상 제공 한국어 학습 보조자료 제공 (한국 젊은이 문화, K-POP, 만화, 동요 등)

1. 도서관

지역도서관 이용

- 한국에는 전국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 도서관에는 많은 책과 영상자료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이나 자료를 대여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 도서관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도서관에서는 주민을 위한 이벤트나 취미교실도 진행하는데, 지역주민은 대부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박물관·미술관

전국 박물관·미술관 현황

-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41개의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수는 약 1,500개에 이릅니다.
- 대한민국 전역의 박물관·미술관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전국박물관 미술관정보표준데이터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museu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센터

문화센터 수업 참여

- 문화센터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대기업이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 문화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강좌를 제공하는데, 통상적으로 봄학기(3~5월), 여름학기(6~8월), 가을학기(9~11월), 겨울학기(12~2월)의 4학기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하루만 제공하는 일일강좌 형식 수업도 있습니다.
- 인기있는 강좌는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문화센터 수업에 참여하려면, 미리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빨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포츠시설

국민체육센터 이용

- 한국에는 전국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 국민체육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영, 탁구, 요가 등 스포츠교실 운영합니다
- 지역의 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교실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 ‘국민’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스포츠시설 이용

- 지자체 운영 스포츠시설 이외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다수의 스포츠시설이 있습니다.
- 민간 스포츠시설의 규모와 이용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 스포츠 시설 중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

-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로 구분합니다.
- 한국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종류별로 분리한 후 버려야 합니다.

일반쓰레기

- 일반쓰레기는 지역별로 버리는 장소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쓰레기는 해당 지역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는 크기가 다양하고, 지역이나 크기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 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역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예시



출처: 경기도 뉴스포털(gnews.gg.go.kr).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물기를 빼고 버려야 합니다.
- 닭뼈, 돼지뼈, 조개껍데기 등 딱딱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용 봉투에 버리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대형쓰레기

- 책상, 침대, 냉장고, TV와 같이 큰 쓰레기는 대형쓰레기로 분류하고,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집 앞에 버립니다.
- 대형쓰레기를 위한 스티커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거주지 내 편의점, 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대형쓰레기 스티커는 쓰레기 크기와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폐기물 스티커 예시



출처: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재활용 쓰레기

-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스티로폼, 빈 명 등은 재활용 쓰레기라 부릅니다.
- 재활용 쓰레기는 종류별로 따로 모았다가,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버립니다.
-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요일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거주하는 곳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리사무소에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분리수거 쓰레기통



출처: 은평시민신문(www.epnews.net).

의류수거함용 재활용품

- 다른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헌옷, 신발, 이불 등은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이라 부르고, 쓰레기통이 아니라 의류수거함에 버립니다.
- 의류수거함은 가까운 주민센터 앞이나, 골목, 아파트 안 등에 있습니다.
- 의류수거함에 버릴 수 있는 물품은 헌옷, 신발, 가방, 담요, 커튼입니다.
- 솜이불, 방석, 바퀴 달린 여행가방 등은 의류수거함에 버릴 수 없습니다.



2. 애완동물 애티켓

반려견 등록

-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대상동물’로 분류되어 거주지의 시청/군청/구청 또는 동물대행기관에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대행기관은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등록대행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처음 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인이 동물과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 등록 이후의 변동사항은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동물상태 변경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완동물 애티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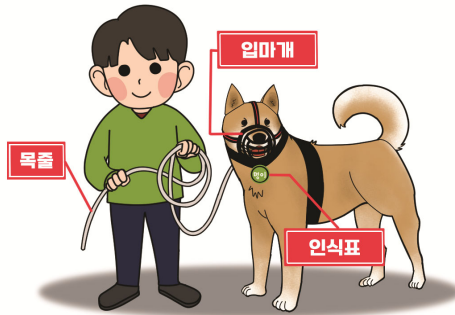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2m 이내)을 매고, 인식표(등록번호 기재)를 착용시켜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배변할 경우는 반드시 주인이 치워야 하며, 이를 위해

외출 시 항상 배변 봉투를 챙겨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나 복도와 같이 공공장소의 좁은 공간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할 때에는 애완동물을 케이지에 넣고 문을 잠그거나, 팔로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

-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인식표와 더불어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
-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 주인은 반드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공공요금 납부

공공요금 납부 방법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발생하면 주소지로 요금납부 청구서가 배송됩니다.
- 공공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공공요금은 청구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달 발생하는 공공요금은 자신의 은행통장번호와 자동 납부 서비스를 연결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을 매달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청구서 예시

(05725-00037)

청구서의 고객성명이 실제 전기사용자와 다른 경우 14일 이내 **한전에 전기사용 계약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시 반드시 환전 또는 고객번호(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 고객님의 2020년 11월분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 자동이체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잔액만큼만 인출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3급이상 상이유급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시어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뒷면 참조)		전기사용장소 대전광역시 금천구 홍길동로 44 청구금액 91,230 원 고객번호 01 2345 6789 납기일 2020년 11월 25일 사용기간 2020년 10월 05일 ~ 2020년 11월 04일																																																																											
<table border="1"> <thead> <tr> <th>청구내역</th> <th>금액</th> <th>고객사항</th> <th>주해</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요금</td> <td>7,300</td> <td>계약종별</td> <td>주택용전력</td> </tr> <tr> <td>전력량요금</td> <td>81,800</td> <td>검침일</td> <td>05</td> </tr> <tr> <td>-관련전요금</td> <td>84,300</td> <td>계량기번호</td> <td>11111111111</td> </tr> <tr> <td>-환경비용차감</td> <td>-2,500</td> <td>계량기배수</td> <td>1</td> </tr> <tr> <td>기후환경요금</td> <td>2,650</td> <td>계약전력</td> <td>3</td> </tr> <tr> <td>연료비조정액</td> <td>-1,500</td> <td>가구수</td> <td>1</td> </tr> <tr> <td>복지할인</td> <td>-10,000</td> <td>T V 대수</td> <td>1</td> </tr> <tr> <td>전기요금계</td> <td>80,250</td> <td colspan="2">년 월 일 현재미납내역</td> </tr> <tr> <td>부가가치세</td> <td>8,025</td> <td>미납월</td> <td>금액</td> </tr> <tr> <td>전력기금</td> <td>2,960</td> <td></td> <td>미납요금 없음</td> </tr> <tr> <td>전단위점사</td> <td>5</td> <td></td> <td></td> </tr> <tr> <td>당월요금계</td> <td>91,230</td> <td>계</td> <td></td> </tr> </tbody> </table>		청구내역	금액	고객사항	주해	기본요금	7,300	계약종별	주택용전력	전력량요금	81,800	검침일	05	-관련전요금	84,300	계량기번호	11111111111	-환경비용차감	-2,500	계량기배수	1	기후환경요금	2,650	계약전력	3	연료비조정액	-1,500	가구수	1	복지할인	-10,000	T V 대수	1	전기요금계	80,250	년 월 일 현재미납내역		부가가치세	8,025	미납월	금액	전력기금	2,960		미납요금 없음	전단위점사	5			당월요금계	91,230	계		<table border="1"> <thead> <tr> <th>계량기 지칭 비교</th> <th>전차세금 계산서</th> </tr> </thead> <tbody> <tr> <td>당월지침</td> <td>40475.00</td> <td>공급자등록번호</td> <td>120-82-00052</td> </tr> <tr> <td>전월지침</td> <td>39975.00</td> <td>공급받은자등록번호</td> <td>세금계산서 미발급</td> </tr> <tr> <td></td> <td></td> <td>공급가격</td> <td>80,250 원</td> </tr> <tr> <td></td> <td></td> <td>세금가격</td> <td>8,025 원</td> </tr> <tr> <td></td> <td></td> <td>각정일자</td> <td>2020년 11월 18일</td> </tr> </tbody> </table>		계량기 지칭 비교	전차세금 계산서	당월지침	40475.00	공급자등록번호	120-82-00052	전월지침	39975.00	공급받은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격	80,250 원			세금가격	8,025 원			각정일자	2020년 11월 18일
청구내역	금액	고객사항	주해																																																																										
기본요금	7,300	계약종별	주택용전력																																																																										
전력량요금	81,800	검침일	05																																																																										
-관련전요금	84,300	계량기번호	11111111111																																																																										
-환경비용차감	-2,500	계량기배수	1																																																																										
기후환경요금	2,650	계약전력	3																																																																										
연료비조정액	-1,500	가구수	1																																																																										
복지할인	-10,000	T V 대수	1																																																																										
전기요금계	80,250	년 월 일 현재미납내역																																																																											
부가가치세	8,025	미납월	금액																																																																										
전력기금	2,960		미납요금 없음																																																																										
전단위점사	5																																																																												
당월요금계	91,230	계																																																																											
계량기 지칭 비교	전차세금 계산서																																																																												
당월지침	40475.00	공급자등록번호	120-82-00052																																																																										
전월지침	39975.00	공급받은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격	80,250 원																																																																										
		세금가격	8,025 원																																																																										
		각정일자	2020년 11월 18일																																																																										
청구금액 91,230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용량 비교</th> </tr> </thead> <tbody> <tr> <td>당월</td> <td>500 kWh</td> </tr> <tr> <td>전월</td> <td>263 kWh</td> </tr> <tr> <td>전년동월</td> <td>260 kWh</td> </tr> </tbody> </table>		사용량 비교	당월	500 kWh	전월	263 kWh	전년동월	260 kWh																																																																			
사용량 비교																																																																													
당월	500 kWh																																																																												
전월	263 kWh																																																																												
전년동월	260 kWh																																																																												

출처: 한국전력공사(online.kepco.co.kr).

4. 소비자 보호

상품 구매 후 불공정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 상품을 구매한 후 물건에 대한 설명과 제품이 다르거나 물건 구매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를 보았다면 소비자 보호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센터는 소비자가 겪은 불공정 거래나 피해를 신고하고,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 1372번으로 전화하면 한국소비자원과 연결되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보호센터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1372번으로 전화하여 문제 발생 날짜와 장소, 관련 업체 이름 및 연락처, 구매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피해 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소비자 상담 메뉴에서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접수하면 담당자가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 모바일앱 신고 : 스마트폰으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자원봉사

자원봉사 유형

- 한국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자원봉사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공식자원봉사와 아는 사람들끼리 격식없이 참여하는 비공식자원봉사가 있습니다.
- 자원봉사는 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보건의료, 농어촌, 문화행사, 환경보호, 행정보조, 안전·방범, 인권·공익, 재해·재난·응급, 국제협력,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방법

- 인터넷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전국의 자원봉사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자원봉사 참여방법,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자원봉사 안내 기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관에 연락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XVI 국내동포 관련 법제

1. 국내동포 관련 법령

국내동포 적용 법령

- 법령이란 법률과 법률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
- 국내동포에게 적용되는 법령에는 재외동포를 위해 제정된 법령과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든 법령으로서 국내동포에게도 적용되는 법령으로 구분됩니다.

재외동포를 위해 제정된 법률

소관부처	법률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19.01.15. 제정)
재외동포청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0.05.20. 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05.26. 제정)
	재외동포기본법(2023. 5. 9. 제정)
법무부	재외국민등록법(1949.11.24. 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09.02. 제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별법(2007.05.17.) → [과거 법률]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별법(1967.01.16. 제정)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01.03. 제정)
고용노동부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2020.06.09. 제정)

국내동포에게 적용되는 주요 법률

분야	소관부처	법률
국적	법무부	국적법(1948.12.20. 제정)
출입국·체류	법무부	출입국관리법(1963.03.05. 제정)
사회통합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05.17. 제정)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2008.03.21. 제정)
병역	병무청	병역법(1949.08.06. 제정)
노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1981.12.31.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05. 제정)
		근로기준법(1997.03.13. 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3.08.16. 제정)
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2005.01.27. 제정)
교통	경찰청	도로교통법(1961.12.31. 제정)
금융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1961.12.31. 제정)
		은행법(1950.05.05. 제정)
부동산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1981.03.05. 제정)
	법무부/국토교통부	상가임대차보호법(2001.12.29. 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01.19. 제정)
자녀양육	교육부	영유아보육법(1991.01.14. 제정)
교육	교육부	초·중등교육법(1997.12.13. 제정)
		고등교육법(1997.12.13. 제정)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1994.03.16. 제정)

대한민국 법령 검색

- 국내동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역별 법령은 ‘알기쉬운 대한민국 생활법령’ 홈페이지(www.easy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의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국내동포정책 수행 기관

재외동포청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oka.go.kr).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 국내동포와 관련하여 제1차 재외동포정책기본계획 중점과제 3-3번에 국내동포 지원을 설정하고, 출입국·체류 관련제도 상시 안내 및 설명회 개최, 모국 귀환 고령 동포를 위한 제도 정비,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 인프라 구축,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에, 통합민원실은 서울(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에 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www.okocc.or.kr).
- 재외동포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를 주로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동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하부조직입니다(www.immigration.go.kr).
-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전국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내체류 외국인의 체류연장과 변경, 불법체류자 단속, 체류자격 관련 민원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6개 출입국·외국인청, 14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2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가 있으며 정확한 주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내동포와 관련하여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관리,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 출입국 관련 증명서 발급, 국내동포가 참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www.hrdkorea.or.kr).
-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기능장려 사업,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 국제인력본부 외국인력국에서 외국인력 근로계약 체결과 사증발급 지원, 고용 허가제 서비스센터 운영, 외국인력 명부 및 통계관리,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내동포와 관련하여, 외국국적동포로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고용허가(H-2) 자격의 근로자의 고용과 사업장 관리, 애로사항 해소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전국에 6개 지역본부와 26개 지사가 있으며, 정확한 주소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법무부 지정)

- 국내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동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 국내동포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단체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동포 정착지원 안내서

발행인: 재외동포청장

발행처: 재외동포청

발행일: 2025년 1월
